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의자 등 출석요구 시 피의사실 요지 등 구체적 통보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32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고소장·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거나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

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2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명시하고,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중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의 사본을 출석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이를 제3자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2항·제3항, 제221조제4항 신설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생략)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u>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u>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u>피의자의 사건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 고발장의 내용 중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에 한정하여 그 사본을 출석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u>

현행 제200조¹⁾ 및 제221조²⁾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출석요구서 발송 등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에 규정되어 있음.

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음.³⁾

-
- 1)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한편, 현행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 등 열람·등사와 달리,⁴⁾ 공소제기 전 고소장·고발장 등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다만, 현행 실무상 수사준칙을 근거로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도 이루어지고 있음.⁵⁾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4)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 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사준칙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서 고소장·고발장 등 열람·복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 신청에 대해 해당 서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이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공소제기 전 열람·복사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현행과 같이 공소제기 전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면, 고소·고발 사건 피의자의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고소장·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게 되거나, 열람·복사 신청 허용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수사준칙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피의자 신청이 없더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 시 출석요구서에 고소장·고발장 사본(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 한정)을 첨부하도록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 검사·사법경찰관 등의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48
